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10 선고 2023가단65224(본소), 2024가단76498(반소) 판결
[손해배상 청구의 소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 변호사 최문기, 유상화

피고(반소원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 변호사 진승현

변론 종결2024. 8. 29.

판결 선고2024. 10.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2024.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6,957,268원 및 그중 169,869,401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087,867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2. 7. 12.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고(대전지방법원 2022간회합1013호), B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가 2023. 12. 26. 위 법원이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부터 2020. 11. 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2019. 5. 7.부터 2020. 11.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다. 피고는 아래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2023. 3. 3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고단932),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5. 1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노839,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의 화물운송분야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원고의 이익과 업무를 위해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던 사람이다.

가. 피고는 화물운송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내지 운송비를 과다 지급하였다가 피고 명의 계좌로 일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자금을 빼돌려 이를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9. 5. 15.경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와 계약하여 일을 하였던 화물운송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원고 명의 계좌에서 위 기사에게 허위로 과다 지급한 후, 위 기사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다시 돌려받은 뒤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6.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합계 197,500,000원 상당의 원고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2.경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고, 적법한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의 세금납부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의 돈 총 297,5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9. 5월부터 2020. 12월까지 매월 16,000,000원씩 합계 320,000,000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2020. 4. 13. 원고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66,500,000원을 보증한 뒤 2022. 6. 24. 원리금 169,869,401원을 위 은행에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9. 1. 30.부터 2020. 12. 30.까지 원고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322,912,133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 7,087,8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 판단

1)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자금 297,5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횡령액수가 3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액 중 1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횡령범행 이후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피고는 위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B가 피고 이전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기에도 B의 지시에 의해 발생해 온 일이므로 위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B에 대한 형사책임 유무와 관련된 문제일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7,500,000원(= 297,500,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판단

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와 피고, D은 2019. 5. 2. 경영권 양도 및 주식 무상증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주거래은행인 E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을 피고와 D이 책임지고 상환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E은행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보증인으로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2)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 30.부터 2020. 12. 30.까지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330,000,000원을 이체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322,912,133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그 차액인 7,087,867원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위 차액의 반환을 구하면서 위 돈이 대여금인지 부당이득금인지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는바, 청구원인을 그와 같이 선택하더라도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하나의 계좌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위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의 반소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조지환